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Dream of Incheon, the Vision of Korea



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 신고 안내문

인천광역시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 행위 등에 대하여 **신고**를 받습니다.
위반행위를 근절하여 국제도시로서 인천의 가치를 재창조 하고자 합니다.

승차거부 사례

- 목적지가 가까운 거리라며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 미터기 요금외 별도 요금을 요구하면서, 별도 정액요금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고 하는 행위
- 승차 후 목적지를 말하자 교대시간, 식사시간, 가스충전 등 이유를 들어 하차요구 행위

부당요금 사례

- 미터기 요금외 별도로 추가요금을 받는 행위
-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정액 요금을 받는 행위
- 목적지가 사업구역(인천) 밖으로 운행시 시계외 지역을 벗어나기 전에 시계외 할증 버튼을 눌러 요금을 받는 행위

택시 불법운행 신고포상금 지급 안내

지급대상 | 택시 승차거부 행위를 신고하여 그 결과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한 사람

포 상 금 | 건당 **50,000원**

신고전화 | 미추홀콜센터(국번없이 **120**), 인천광역시청 택시화물과(440-3827)
각 구청 교통관련 부서

*** 신고시 위반행위 증명자료 첨부 제출**
– 위반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사진 , 녹음, 영수증 등

※ 승차거부, 부당요금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자격정지 처분 합니다.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 이제 그만!

인천광역시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들이 택시 이용시
승차거부, 부당요금, 불친절 행위를 근절하여 국제도시 위상에 걸맞은
택시 서비스를 제공은 물론, **인천광역시의 가치 재창조**를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차거부 사례

| 승차거부 개념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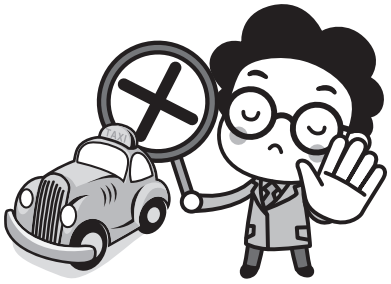
- 목적지가 가까운 거리라며 가지 않겠다고 하는 행위
- 미터기 요금외 별도 요금을 요구하면서, 별도 정액요금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고 하는 행위
- 승차 후 목적지를 말하자 교대시간, 식사시간, 가스충전 등 이유를 들어 가지 않겠다고 하는 행위

부당요금 사례

| 부당요금 개념 |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 미터기 요금외 별도로 추가 요금을 받는 행위
-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정액 요금을 받는 행위
- 목적지가 사업구역(인천) 밖으로 운행시 시계외 지역을 벗어나기 전에 시계외 할증 버튼을 눌러 요금을 받는 행위



▶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자격정지 및 과태료 동시 처분)

위반 행위별	자격정지			과태료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승차거부	경고	자격정지 30일	자격취소	20만원	40만원	60만원
부당요금	경고	자격정지 10일	자격정지 20일	20만원	40만원	60만원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